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968
----------	------

발의연월일 : 2017. 5. 22.

발의자 : 김영춘 · 김철민 · 박남춘

서형수 · 박주민 · 이재정

유승희 · 박정 · 박경미

황주홍 · 송옥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어획량 등을 결정하는 한일어업협정의 결렬·지연으로 2016년 7월부터 우리 어선들의 일본 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조업이 중단되어 어업인 등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으나 장기간 조업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관련 법령의 근거가 부족하여 지원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어업협정 지연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어업협정으로 인하여 조업구역 및 어획량 등이 제한되는 어업으로서 어업인이 대체어장에 출어하는 경우 그 출어비용을 수산발전기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용자 등의”를 “용자, 보조 등의”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개발”을 “개발(대한민국이 당사국으로서 체결하거나 가입한 어업에 관한 국제협정으로 인하여 조업구역 및 어획량 등이 제한되는 어업의 어업인이 대체어장에 출어하는 경우 그 출어비용의 보조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9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u>융자</u>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49조(기금의 용도) ① ----- ----- ----- <u>융자</u> , 보조 등의-----.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새로운 어장의 <u>개발</u>	9. ----- <u>개발(대한민국이 당사국으로서 체결하거나 가입한 어업에 관한 국제 협정으로 인하여 조업구역 및 어획량 등이 제한되는 어업의 어업인이 대체어장에 출어하는 경우 그 출어비용의 보조를 포함한다)</u>
10. ~ 15. (생 략)	10. ~ 1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